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유족급여, 행방불명급여, 미지급보험급여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어선원등의 재해보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유족급여, 행방불명급여, 미지급보험급여 지급제한 결정의 절차 및 고려사항 신설(안 제25조의3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5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에 대하여 양육책임 이행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(이하 ‘급여제한심의대상자’라 한다)에 대해 법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유족급여·행방불명급여 또는 법 제31조의2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보험급여 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신청해야 한다.

1.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
2.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3.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

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,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·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 서류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야 한

다.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받으면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의3제1항의 어업재해보험분과위원회를 통해 보험급여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 등을 결정한다.

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 등이 결정되면 그 결정서를 신청인 및 중앙회에 보내야 한다.

⑥ 중앙회는 제5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으면 그에 따라 급여제한심의 대상자에게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.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제5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.

1.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: 같은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,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 같이 나누어 지급

2.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: 다음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,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 같이 나누어 지급

⑦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재해를 입은 어선원 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(제25조의3제7항 관련)

대상자	판단 시 고려사항
부모	1.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(생후부터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거나,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2.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양육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 3.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에 대해 범죄행위,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위반 정도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의3(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) (생 략)	제25조의3(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)
<신 설>	②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에 대하여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(이하 ‘급여제한심의대상자’라 한다)에 대해 법 제21조제1항제 5호 및 제7호에 따른 유족급여·행방불명급여 또는 법 제31조의 2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의 제 한을 신청하려는 유족은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보험급여 제 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신청해야 한다.
	1.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의 유 족임을 증명하는 서류
	2. 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 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3. 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 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
<신 설>	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신청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
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, 급여제
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
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
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·조사
한 후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
신청서 및 첨부 서류와 함께 해
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.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
따라 신청서 등을 받으면 「수
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
령」 제8조의3제1항의 어업재해
보험분과위원회를 통해 보험급
여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 등을
결정한다.

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
따라 급여제한 여부와 감액비율
등이 결정되면 그 결정서를 신
청인 및 중앙회에 보내야 한다.

⑥ 중앙회는 제5항에 따라 결정
서를 받으면 그에 따라 급여제
한심의대상자에게 급여를 산정
하여 지급한다. 이 경우 급여제
한심의대상자에게 제5항에 따
라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다
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

<신 설>

다.

1.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: 같은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,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

2. 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: 다음 순위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그 순위자에게 전액 지급하고,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

⑦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826